

□ 관련 법령

○ 「도서관법」 제20조 (도서관 자료의 납본)

-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3.>
-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·종류·형태·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도서관법」 제23조 제5항 (지역대표도서관 업무)

도서관법 제23조(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)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시·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제공
- 2.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- 3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- 4.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
- 5.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
- 6.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

○ 「도서관법」 제26조 (도서관자료의 제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·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도서관법」 시행령 제13조 (도서관 자료의 납본)

-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(納本)하는 도서관자료(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.
 - 1. 도서
 - 2. 연속간행물
 - 3. 악보, 지도 및 가제식(加除式) 자료
 - 4.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
 - 5. 슬라이드, 음반, 카세트테이프,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
 - 6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,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

- 7. 점자자료,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
- 8.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
-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(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 <신설 2016.7.26.>
 - 1. 해당 자료와 서지(書誌)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
 - 2.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
 - 3.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,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
-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-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- 4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
- 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.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.
- 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: 2부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.
 - 2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: 3부
 - 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: 1부
- 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국회도서관법」 제7조 (자료의 제공 및 납본)
-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)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 - ⑤ 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⑥ 납본의 절차·보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 제18조 (업무)

-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
 - 2.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제공
 - 3.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 - 4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 - 5.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
 - 6.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
 - 7.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
 - 8.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
 - 9.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
 - 10.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- ② 서울도서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다음 년도의 도서관 운영계획
 - 2. 도서관 상호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
 - 3.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
 - 4.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
 - 5.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

○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 제20조 (도서관자료의 제출)

-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,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과 그 소속 행정기관
 - 2. 시 소속 공사 및 공단
 - 3. 시의 출자·출연 법인
 - 4.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·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·개인·단체
-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서
 - 2. 연속간행물
 - 3. 약보, 지도 및 가제식 자료
 - 4.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
 - 5. 슬라이드, 음반, 카세트테이프,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
 - 6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,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
 - 7. 점자자료,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
 - 8.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